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 도입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8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 신설	2
2.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축소	11
※ 참고자료: 규제 재검토 관련 유사 전문자격사법 비교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 신설

개정안은 변리사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변리사회 가입 의무 위반과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미납을 등록 또는 등록 갱신 거부 사유로 추가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갱신 없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25조).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① (생략) <신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	제5조의2(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

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항-----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

1.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 갱신이 거부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u> <u><신설></u> 3. 4. (생략) <u>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5조의3(등록취소) ----- ----- ----- ㄱ. 1. (현행과 같음) 2. <u>등록 또는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u> <u>2의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u> 3. 4. (현행과 같음) <u>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u> 2. <u>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3. <u>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	--

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¹⁾은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최초로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 갱신 없이 평생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5조²⁾).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제3조)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변리사는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면서(제15조3) 이를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변리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27조4).

[표 2]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및 과태료 납부 현황(2025년 3월 기준)

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		납부		미납부		면제·유예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16~'17년	281 (100)	800 (100)	88 (31.3)	120 (15.0)	127 (45.2)	450 (56.3)	66 (23.5)	230 (28.8)
'18~'19년	169 (100)	550 (100)	31 (18.3)	40 (7.3)	120 (71.0)	460 (83.6)	18 (10.7)	50 (9.1)
'20~'21년	160 (100)	552 (100)	28 (17.5)	38 (6.9)	123 (76.9)	490 (88.8)	9 (5.6)	24 (4.3)
'22~'23년	141 (100)	496 (100)	13 (9.2)	29 (5.8)	123 (87.2)	453 (91.3)	5 (3.5)	14 (2.8)

자료: 특허청

그런데, 이러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

2)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4) 「변리사법」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은 변리사 등록 이후 휴업 사실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제6조의2⁵⁾)를 부여하면서도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변경신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데, 대다수 변리사가 최초 등록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변리업 지속 수행 여부, 주소변경·범죄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고,

특히, 「변리사법」에 따른 각종 의무 회피⁶⁾ 및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휴업 상태에서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가 상당수 발견⁷⁾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등록 변리사에 대해서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제11조⁸⁾)하고 있는데, 이는 변리사회를 통해 회원의 직무 윤리와 전문성을 감독·유지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통해 업계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나,

5)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휴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수·공익활동 등 「변리사법」상 각종 의무에서 제외됨.

7)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등록 변리사 중 ‘휴업’ 신고한 변리사(변호사 자격 소지자 포함)는 약 57.4%에 달함(2025년 3월 기준).

8)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등록 변리사 중 변리사회에 미가입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⁹⁾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며, 기존의 등록 거부 사유¹⁰⁾ 외에 ①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② 의무연수를 미이수한 자로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특허청장이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리사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변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¹¹⁾ 특히 의무연수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변리사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¹²⁾가 이루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률소비자에 대한 권익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특허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등록변리사(변호사 자격 소지자 포함) 11,096명 중 변리사회 가입자는 6,957명임(가입율 62.7%).

10)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특허청은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휴업자에 대해서 매 등록갱신 신청 시마다 휴업상태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임.

1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의무연수 미이수 변리사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김성원 위원)이 있었음.

참고로 변리사와 유사한 전문자격사의 경우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 등은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은 등록 갱신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음.

[표 3] 자격사별 등록갱신 제도 도입 현황

구 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록갱신 제도 (갱신기간)	X	X	O (5년)	O (5년)	O (5년)	O (5년)	X

특허청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무연수를 계속 미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어 변리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라 법률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리사법」에 따른 각종 의무회피,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등록 변리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첫째, 안 제5조의2제2항13)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2

호)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제3호)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제3호와 관련하여 연수교육 이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등록 거부
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한 것¹⁴⁾으로서 최초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3호가 최초 등록시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¹⁵⁾

제2호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
허청장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변리사회 가입이 선
행)하고 있는 반면, 현행 제11조¹⁶⁾는 변리사회 가입 의무가 등록 이후
에 비로소 발생(변리사 등록이 선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후관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개정과 함께 ‘변리사

13) 안 제5조의2(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②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
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
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15) 안 제5조의2제2항에 “최초 등록의 경우에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게 되면, 예컨대
등록한 변리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진폐업, 결격사유, 징계 등으로 인해
등록 취소된 후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전의 연수교육 미이수 및 과태료 미납을 사유로 안 제5
조의2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특허청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
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 가입 의무’ 대상에 관한 제11조를 보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둘째, 변리사 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리사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록 갱신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경우 기존 제도하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갱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6개월의 등록 갱신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변리사 등록 후 5년 경과가 임박한 사람¹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등록 갱신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과조치를 보완¹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7) 이 경우 현행 ‘등록한 변리사’를 ‘등록을 하려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예시)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과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18) 예를 들어 등록 후 4년 6개월에서 5년 이내 경과한 사람은 개정 법률 시행 후 등록 갱신일까지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부여됨.

19)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사람과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년이 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축소

개정안은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 회칙의 인가’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 -----.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5. 제9조에 따른-----설립
6. (생략)	6. (현행과 같음)

현행법²⁰⁾은 특허청장이 변리사 결격사유, 변리사 등록 거부·취소, 변

20) 「변리사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리사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이 법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일몰규제)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조정실 주도로 실시한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2019년 6월)에서 ‘제4조²¹⁾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3²²⁾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제10조²³⁾에 따른 변리사회 회칙의 인가’는 필요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일몰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를 하였고, 개정안은 이러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변리사법」상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표 5] 일몰규제 심사결과(국무조정실, 2019. 6.)

규제사무명 (근거조항)	검토결과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규제위원검토결과
변리사 결격사유 (제4조)	규제존속	일몰해제	- (규제존속) 변리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 - (일몰해제) 최소한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였다고 판단, 일몰해제함

21)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 5. (생략)

22) 「변리사법」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23) 「변리사법」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규제사무명 (근거조항)	검토결과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규제위원검토결과
변리사 등록취소 (제5조의3)	규제존속	일몰해제	- (규제존속) 변리사 자격사 등록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므로 존속이 타당함 - (일몰해제) 사망, 폐업신고, 결격사유 등 등록취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였다고 판단, 재검토의 실익이 없어 일몰해제함
변리사회의 회칙인가 (제10조)	규제존속	일몰해제	- (규제존속) 변리사회가 법정단체인만큼 특허청에서 설립 인가를 위하여 최소한의 회칙 규정이 필요함 - (일몰해제) 변리사회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칙 정보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일몰해제함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변리사 결격사유, 변리사 등록의 취소, 변리사회 회칙의 인가 규정은 변리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규정은 전문자격사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참고자료 참조)으로서 특별히 과중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규제 재검토 관련 유사 전문자격사법 비교

구 분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u>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u>등록취소된 후 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u>종료된 날부터 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u>선고유예기간</u>중에 있는 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u>등록취소된 후 5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 분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등록취소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회칙인가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u>특허청장의 인가</u>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목적 및 설립)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u>금융위원회의 인가</u>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